



전기실 방전감시장치 설치작업 중 감전



전기실 고압 배전반에서 전력설비 부분방전 감시장치 설치작업 중 충전부인 변압기 단자대에 신체일부가 감전되어 사망



발생 원인

- 충전전로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조치 미실시
-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 미확보

TIP

안전작업

1 충전부 방호조치

- 고압 배전반 입구 또는 내부 등 고압활선 근접작업 장소에서의 작업은 절연덮개 등 충전부 방호조치 실시

2 접근한계거리 준수

- 노출된 충전부에 접근하여 작업할 경우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 준수

3 절연용 보호구 지급 및 착용

- 충전전로 근접 작업자에게 절연모, 절연화, 절연장갑 등을 지급하고 절연용 보호구 착용여부 확인



절연용 보호구와 절연 방호구

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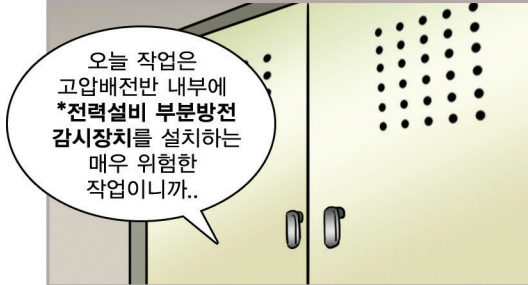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(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3조 (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)





전기실 방전감시장치 설치작업 중 감전

충전전로 주위에서 작업 시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세요!



*전력설비 부분방전 감시장치 : 전력설비에서 발생하는 방전현상을 체크하여 상황실에서 모니터 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.

